

제 1 장 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

제 1 절 최초규정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1.3 조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부속서 1-가에 기재된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은 부속서 1-가에 기재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조치는 같은 조건하에 있는 경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의무의 범위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 영역 내의 지역정부 및 당국에 의한 이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지역정부에 의해 취하여진 이 협정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제21장(분쟁해결)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제21.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이 이 협정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국은 자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1.5 조 다른 협정의 참조

이 협정이 다른 협정 또는 법률문서의 전체 또는 부분을 참조하거나, 참조로 이 협정에 통합시키는 경우, 그 참조는 그러한 협정 또는 법률문서의 불가분의 일부인 관련 주석, 주해, 의정서, 부속서, 부록 등을 포함한다.

제 1.6 조 문화 협력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해를 증대시키고 세계 시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 서로의 경쟁력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하여 문화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합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2.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의 협상을 고려하는 데에 합의한다. 미래의 그러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제 2 항에 언급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섭될 것이며, 그것은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문화유산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이다.

4. 제 23.2 조(개정)는 제 2 항에 언급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 제 8 장(투자) 및 제 21 장(분쟁해결)의 분쟁해결 규정은 제 2 항에 따라 협상되는 협정을 포함하여 이 조에 적용되는 사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자동차 분야의 양자간 무역 및 투자 촉진

양 당사국은 그들로 하여금 세계 생산과 공급망의 혜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분야의 양자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 2 절 일반적 정의

제 1.8 조 일반적 적용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란 제20.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립되는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과세를 말하며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추가세 또는 추가금의 형태를 포함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 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 년도 GATT 제 3 조제 2 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고 세계무역기구의 의무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그리고
- 라. 수입수량제한 및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하여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하며,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다.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GPA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 그리고 소호의 주를 포함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품목분류체계에서 사용되는 4단위 품목번호 또는 품목번호 앞의 처음 4단위를 말한다.

조치는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법에 따른 한국 국민,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법에 따른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당사국의 기업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부속서 15-가(공기업의 국가별 정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국이 소유지분을 통하여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품목분류체계에서 사용되는 6단위 품목번호 또는 품목번호 앞의 처음 6단위를 말한다.

품목분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상의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이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후속 협정을 말한다.

제 1.9 조 국가별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정부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단일 공화국인 한국의 경우, 지역정부라는 용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 준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말한다.

주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주라는 용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의 주를 말하며, 유콘과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그리고 누나부트를 포함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 및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1) 캐나다의 영토, 상공, 내수 및 영해

2)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6부에 합치되는 캐나다의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3)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5부에 합치되는 캐나다의 대륙붕

부속서 1-가
다자간 환경협정

- 가.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1979년 6월 22일 개정판)
- 나. 1987년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90년 6월 29일, 1992년 11월 25일, 1997년 9월 17일, 1999년 12월 3일 개정판)
- 다. 1989년 3월 22일 바젤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라. 1998년 9월 10일 로테르담에서 채택된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 마. 2001년 5월 22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